

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?

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

글 편집실



Q

우리나라 업무상질병 가운데 근골격계질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 사업장의 경우 개인의 잘못된 습관과 자세를 그 원인으로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.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, 혹은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?

A

2019년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 노동자 1만5,195명 가운데 9,440명(62.1%)이 근골격계질환 노동자로 조사되었습니다. 근골격계질환이 우리나라 최초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해는 1986년이며 해마다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이 증가함에 따라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. 법 개정에 따라 2003년 7월 12일부터 사업주에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 의무가 부여됐으며, 사업주는 시기에 맞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·정기·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고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근골격계 부담작업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호)은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을 하는 작업부터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까지 그 범주가 매우 넓고, 작업유형도 다양합니다.

만약, 사업주가 법령에 규정된 유해요인조사 및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657조(유해요인 조사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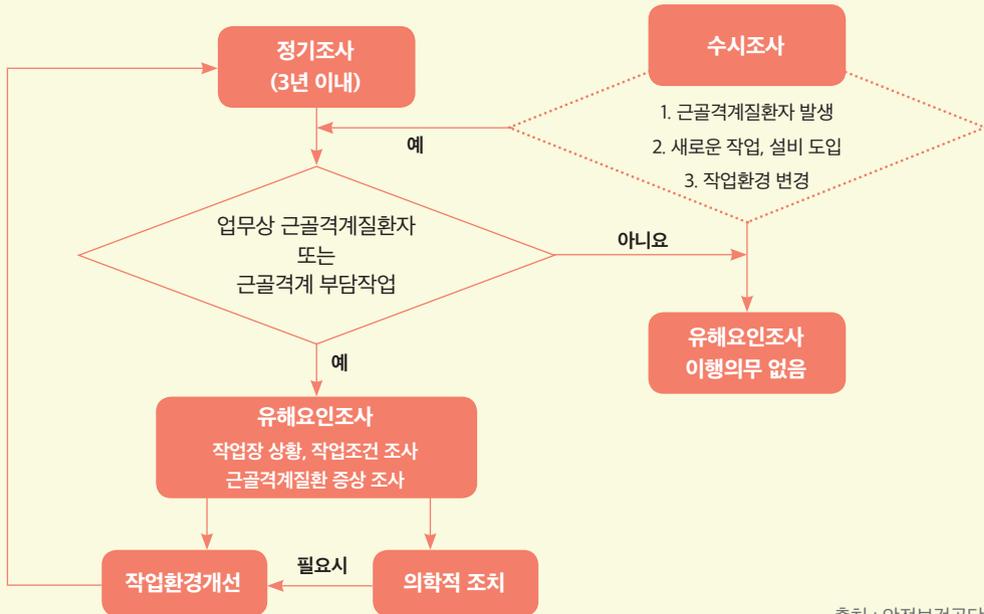
1. 설비·작업공정·작업량·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
2. 작업시간·작업자세·작업방법 등 작업조건
3.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

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7. 3. 3.>

1.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가목·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
2.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·설비를 도입한 경우
3.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

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흐름



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.

48P <독자의 소리>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.

